

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)이라 한다)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“대학” 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한다.

제3조 (사업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연구사업
2. 산학협력정부지원사업
3.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, 특허 및 지적재산권 취득 · 관리사업
4.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사업
5. 중소기업 지원사업
6.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
7. 재정지원사업
8. “대학”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
9. 부설연구소 평가 및 지원
10.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제2장 조직

제4조 (임원) 단장은 산업체,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요직에 근무한 자 또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부단장은 본교 교직원 또는 본 교단 목사, 장로로 유경험자로 하며, 임기는 따로 한다.

제5조 (조직)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팀,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, 창업보육센터, 창업지원센터, 인재개발원, 산학공동장비활동센터 및 사업단(팀) 등을 둘 수 있다.

② 팀에 팀장 1인, 센터에 센터장 1인, 원에 원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위별 직원, 조교와 연구원을 두거나 전문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와 협약에 의하여 공동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고, 산학협력단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센터 또는 사업단위별 운영지침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 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업무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.

제7조 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
3.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및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·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단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6. 산학협력단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
7. 부속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8. 기타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
9. 교원창업에 관한 사항

제8조 (소집 및 의결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회계

제9조 (회계처리)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 및 각 사업단별 집행지침에 따라 처리하되, 경영성과,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의 재정 운영 및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하고, 자금 집행은 총무처에서 담당한다. 단, 교비 대응투자비는 대학에서 집행한다.

제10조 (예산 및 결산보고)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운영계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
2.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
3. 자금계산서
4. 부속서류

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·확인하여야 한다.

제11조 (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)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2조 (감사) 대학의 장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감사하게 할 수 있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로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6일로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8일로 시행한다.